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03701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0370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599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2. C

3. E

변론 종결 2024. 11. 6.

판결 선고 2024. 12.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59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1,266,79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D, A과 공동하여 1,660,847,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615,628,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1,009,685,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회사"를 일괄하여 "A"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경훈

판사김제욱

판사강경표